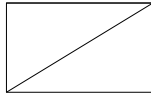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년 월 일	2016. 03. . (제 회)

심의  
의  
결  
사  
항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복지환경국장 오정식
제출년월일	2016. 3. .

기획예산과장 심사필

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명하고, 구정참여 정책 결정 과정의 특정 성별의 배제 예방 등 『양성평등 기본법』 개정시행에 따라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전면 개정
- 나. 조례 제명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” 로 변경
- 다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비(안 제1조)
  - 「여성발전 기본법」 을 「양성평등 기본법(2015.12.23. 시행)」 으로 정비
- 라. 구정 참여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추가(안 제18조)
  -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
- 마. 여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법령에 따라 정비
  - 위원회 명칭을 “여성위원회” 에서 “양성평등위원회” 로 변경 (안 제7조)
- 바. 여성발전기금 설치 등을 법령에 따라 정비
  - 기금의 명칭을 “여성발전기금” 에서 “양성평등기금” 으로 변경 (안 제33조)
- 사. 부칙추가 : 시행일, 여성위원회 경과조치, 일반적 경과조치 등

- 아.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』 일부개정  
 → 제1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
-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 
 → 제24조 중 “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”를 “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”로 변경
-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 →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변경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
- 다. 합의사항 : 기획예산과와 합의 되었음
- 라. 기 타
- 1) 입법예고(2016. 2. 23. ~ 3. 13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.

**제3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**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

**제5조(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며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2.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
    - 가.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
    - 나.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
  3.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시책
  4.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,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, 단체,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)**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이를 공표할 수 있다.

- 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1. 시행계획 수립,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2.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 3.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
  4.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 5.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
  6.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

- 제8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1. 양성평등, 여성·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
  3.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, 단체,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  4. 광진구의회 의원
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

**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2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·운영하고,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

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3장 양성평등 정책 및 참여 촉진

**제14조(성별영향분석평가)** 구청장은 조례 제정·개정 시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"성별영향분석평가"라 한다)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**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성인지 통계 작성)** 구청장은 인적(人的)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(이하 이 조에서 "성인지 통계"라 한다)를 산출하고,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성인지 교육)**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법령, 정책,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(이하 "성인지 교육"이라 한다)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구청 참여)**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

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·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공직 참여)**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·승진·포상·교육·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,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주민 참여)**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,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경제활동 참여)**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여성의 취업·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
2. 근로자의 모집·채용·교육훈련·승진·퇴직·경력개발·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
3. 임신·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
4.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
5. 기간제근로 및 단시간근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

**제22조(일·가족 양립 지원)**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
2.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
3.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
4.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
5.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
6. 일·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
7.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
8.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23조(평등한 가족생활)**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·장애인가족·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,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4조(복지증진)**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미혼모·이주민·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, 교육·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권보호

**제25조(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)** ① 구청장은 가정·학교·영유아시설·사회교육시설·기업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양성평등주간)** ① 구청장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.

1. 기념행사
2. 세미나,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행사
3.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
4.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

**제27조(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)**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·축적·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여성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**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29조(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)**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30조(유공자 표창 및 포상)**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개인, 단체 및 기관, 소속 공무원에게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**제31조(성차별의 금지)**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, 회의,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접수·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연 한 차례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** ①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.

③ 구청장은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·교육·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양성평등기금

**제33조(기금의 설치 등)**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34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3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여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,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위원회는 제7조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.

**제3조(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,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33조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.

**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,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·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여성발전기금”을 각각 “양성평등기금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23조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6조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 미발생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제14조제2항 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 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령인  
여성발전 기본법이 『양성평등 기본법』으로 개정시행에 따라 조문 정비 등  
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님

#### 4. 작성자

가정복지과 행정7급 권효정(450-7079)

**가정복지과장 신 용 하**